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군산용문초등학교

I 추진 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[신설2022.12.27.]
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[신설2023.6.27.]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[시행2023.9.1.]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부칙 제2조

II 추진 배경
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

III 운영 방침

- 학년(교과)회의, 부장회의,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
- 학교장 결재 후 교육 3주체(교원, 학생, 학부모)에게 공표하고 시행
- 교직원 공람, 학교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
- 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

IV 운영 기간

-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

교육부고시 제2023-28호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

: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 제8조제4호, 제12조제6항 및 제9항,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**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** 다만, 학교의 장은 **2023년 10월 31일까지**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V 세부 운영 내용

○ [제12조제6항의 제3호, 제4호에 대한 규정] 학생 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

<p>참고 1. 교육부고시 제2023-28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</p> <p>제12조(훈육)</p> <p>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.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) 3.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.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

[제12조제6항의 제1호, 제2호, 제3호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적용 예정안]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	수업 중 자리 이탈, 잡담,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내 다른 좌석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	(학생 본인 준비)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
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		교실 내 지정된 위치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 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)	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학생을 지도·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'가'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교무실 등 지정 장소 -교무실, 상담실, 교장실 (수업 종료 시 까지)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 수업시간에 지각 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지정 장소 -교무실, 교실 (점심시간 내 20분 내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(20분) 보장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 ① 3호 '나'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 등 지정 장소 -교무실, 상담실, 교장실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

*지각.결과;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작 10분 후 교실에 입실하거나 수업 종료 10분 전 퇴실 하는 것

○ [제12조 제9항에 대한 규정] 물품보관

<p>참고 2. 교육부고시 제2023-28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</p> <p>제11조(주의)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</p> <p>제12조(훈육)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 1.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.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.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·사용을 금지한 물품</p>

[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적용 예정안]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(예시)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,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품 등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성냥, 레이저 빔 기기, 흉기모형장난감(칼, 총, 너클 등), 학습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해를 주는 물품 등	3일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, 전자담배 등			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박관련물품, 음란물, 도색잡지 등			